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73
----------	-----

2022. 4. 14.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4. 1. 김진홍 의원 대표발의(5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0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2. 4. 14.)  
“ 수정가결 ”

## 2. 제안이유( 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김진홍 의원 )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하고, 장려금등의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에 「자원순환기본법」을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정비함(안 제1조)
- 나. 인용하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4조 및 제7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각각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으로 현행화함(안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다. 장려금등의 지급 대상과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을 “시민”에서 “강남구민”으로 정비함(안 제4조, 제5조)

####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원순환기본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5. 검토의견( 전문위원 : 이문성 )

##### 1 조례안의 취지

- 조례안은 위임근거인 「자원순환기본법」을 명시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을 반영하며, 자치법규의 대인적 효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한정된다는 원칙 등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체계적합성과 효력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그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음.

##### 2 조례안의 개정 내용 및 평가

#### 가. 위임근거로서 상위법인 「자원순환기본법」 명시

- 「자원순환기본법」은 2016년 5월 제정되어 2018년 1월 시행된 바, 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식하는 순환자원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폐기물의 개념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키고, 사회시스템을 소비형에서 순환형으로 전환하여 순환자원의 사용을 최대화함으로써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제정·시행되고 있음.
- OECD 및 EU 국가들은 폐기물도 자원으로 생각하는 자원순환 또는 친환경적 경제성장 등의 개념을 도입하는 법령을 마련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우리나라도 폐기물을 자원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음.

- 현행 조례는 위임법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인 바, 이에 「자원순환기본법」을 명시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 표 >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폐기물 관리 정책	➡	자원순환 정책
인식	버려지는 폐기물		다시 사용되는 순환자원
여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심화		원자재·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
비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저탄소 자원순환형 사회 정착
목표	안전처리 및 재활용율 제고		폐기물 업사이클링 <sup>1)</sup> 체계 구축
전략	감량 → 재활용 → 처리		효율적 생산·소비 → 물질재활용 → 에너지 회수 → 처리 선진화

## 나. 위임근거 법령 및 조문 변경(안 제2조·제3조 등)

- 「자원순환기본법」은 제5조<sup>2)</sup>에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종전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sup>3)</sup>에 명시하고 있었으나, 「자원순환기본법」

1) 업사이클링(Up-cycling) : 폐기물 또는 쓸모없는 제품을 질적·환경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새로운 물질이나 제품으로 전환하는 과정  
 2)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

제정에 따라 삭제되었음.)

- 위와 같은 사유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서 자원순환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sup>4)</sup>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였음.

## 나. 조례의 대인적 효력 명시(안 제4조 및 제5조)

- 자치법규인 조례는 지방자치의 특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음.
- 이에 개정안은 장려금 등의 지급 대상(제4조)과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원 자격(제5조)으로서 ‘시민’이 아닌 ‘강남구민’으로 명시하고 있음.
-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등에 있어서 (단체 등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같은 협의회에 참여한 구성원 중 관외 거주자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의 효력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는 실무상 문제점 없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자치법규의 대인적 효력 대상으로서, 예외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들어온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한 관계를 가진 자(공공시설의 이용자, 공물의 특별허가 사용자 등)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음.

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4)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변경승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치법규의 대인적 효력이외의 지역적(공간적) 효력 등을 감안할 때, ‘강남구민’으로 명시한다면, 개인자격으로서 강남구의 자원순환관리 정책에 기여하였으나, 관외주민인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 대상 적격 여부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현행 조례는 ‘시민’으로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관내에서 활동하며 생활하는 서울특별시 관외 지역의 주민을 배제할 수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직장 근무지의 자치단체가 다를 경우의 형평성 문제 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려금 등의 지급 대상과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원 자격을 ‘거주<sup>5)</sup> 또는 상주하는 주민<sup>6)</sup>’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임.

### 3 조례안 검토 결론

- 금번 조례안은 위임근거법령을 반영함으로써 체계 적합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점 없으나, 조례의 대인적 효력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에 대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법령 정보교류를 집행부가 담당한다는 점에서 관계 법규의 제·개정·폐지 이후 조례의 후속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인용 법조문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5) 거주하는 주민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6) 상주하는 주민은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

7. 토론 요지

- 토론과정 중,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 참여 장려금·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573호

발의일자 : 2022. 4. 14.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 1. 수정이유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 참여 장려금·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임.

## 2. 수정내용

- 장려금등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4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중 “강남구민·단체”를 “강남구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개인·단체”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장려금등의 지급) 구청장은 <u>법 제 31조제1항에 따라</u>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u>시민·단체</u>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4조(장려금등의 지급) ----- 「<u>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u>」 제31조제1항----- ----- <u>강남구민·단체</u> ----- ----- ----- -----.</p>	<p>제4조(장려금등의 지급) ----- ----- ----- ----- <u>강남구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개인·단체</u> ----- ----- ----- ----- -----.</p>

##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자원순환기본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라 구”를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월 말일”을 “지정일”로 한다.

-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중 “법 제31조제1항”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시민·단체”를 “강남구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개인·단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민·단체·관련학자”를 “강남구민·단체·관련학자”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자원순환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p> <p>② (생략)</p> <p>제3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 ----- ----- 「자원순환기본법」----- -----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p>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려금등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 지정일-----  
-----.

제4조(장려금등의 지급)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 강남구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개인·단체 -----  
-----.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 ---  
-----  
----- 강남구민·단체·관련학자 -----  
-----  
-----  
-----.

② (생략)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순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2. 법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  
-----  
-----  
-----  
-----  
-----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② (현행과 같음)